서울특별시 서초구익회 익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쪼레 일부개정쪼레안

의안 번호 30

발의연월일: 2018. 09 . 14. **발 의 자:** 고광민 의원(1명)

찬 성 자: 장옥준,전경희,김정우,김안숙

안종숙,김익태,허은,박미효, 박지남,최원준,김성주,이현숙

(12명)

1. 제안 이유

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의 연구활동을 보장하고 위원회 심의기능을 원활히 하며,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지원 및 투명한 사용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 골자

- 가. 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연구단체 관련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(안 제5조)
- 나. 연구단체에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, 연구활동비 사용에 따른 제한 및 연구 활동비 부정사용에 대한 회수를 규정함(안 제6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「지방자치법」제38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이 구정발전"을 "의원이 의정발전"으로, "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"를 "의원연구단체"로, "입법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"를 "정책개발 및 입법활동"으로 한다.

제2조 중 "연구단체는"을 "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(이하 "연구단체"라 한다)는"으로, "이상 의원"을 "이상의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"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"서초구의회의장"을 "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"으로 한다.

제4조 제목 "(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)"를 "(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의원연구단체의"를 "연구단체의"로, "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"를 "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서울특별시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의회"를 "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"로 한다.

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의원연구단체"를 "연구단체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회의를 시작하고, 참석위원"을 "개의하고, 출석위원"으로 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각호"를 "각 호"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"의원연구단체"를 "연구단체"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"배분"을 "지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"연구결과보고서"를 "연구활동 결과보고서"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"기타"를 "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"로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6조의2(연구단체 지원 등)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위원회는 연구활동비 신청 내역을 심의하고,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한다.
 -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 할 수 없다.
 -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0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해야 한다.

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연구단체가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 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획서 및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호"를 "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"로, "등록"을 "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"으로 한다.

제9조 중 "의원연구단체"를 "연구단체"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전단 중 "의원연구단체"를 "연구단체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사용내역서"를 "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심사"를 "심의"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힞}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 제1조(목적) -----시 서초구의회 의원(이하 "의원 -----의원이 의정발전 "이라 한다)이 구정발전 등 관 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 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-- 의원연구단체-----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----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--으로써 입법정책개발 및 의원발 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연구단체의 구성) 연구단체 제2조(연구단체의 구성) 서울특별 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(이 3명 이상 <u>의원</u>으로 구성하며, 하 "연구단체"라 한다)는 -- 이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상의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 대표하는 대표자(이하 "대표자" 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----라 한다)를 둔다. 제3조(연구단체의 등록 등) ① 연 제3조(연구단체의 등록 등) ① --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등 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초구의 ----- 서울특별 회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 시 서초구의회 의장----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생 략) 제4조(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 | 제4조(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 원회)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원회) ① ---- 연구단체의 --

의 등록 및 운영 등에 <u>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 다)를 둔다.

② 의회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.

제5조(위원회 운영) ① (생 략)

-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수 없다. 다만,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<u>의원</u>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 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참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- 제6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저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<u>의원연구단체</u>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

관한 사
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
시
②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
제5조(위원회 운영) ① (현행과 같
<u>Ф</u>)
<u><삭 제></u>
(2) A 7 F).
③ <u>연구단</u> 체
<u>체</u>
· ④
개의하고, 출석위원
<u>/개막이다, 본 기기 단</u>
· 제6조(위원회의 기능)
각 호
 1. <u>연구단체</u>

- 2. (생략)
- 3.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
- 한 사항
- 5. 기타 필요한 사항 <신 설>

- 2. (현행과 같음)
- 3. ----- 지워---
- 4.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 4. 연구활동 결과보고서-----
 - 5.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--제6조의2(연구단체 지원 등)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 운영공통경비의 5퍼센트 범위 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위원회는 연구활동비 신청 내역을 심의하고, 의장은 위원 회의 심의결과를 연구단체에 통 지하여야한다.
 -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 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 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 할 수 없다.
 -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 거나 제10조의 연구활동 결과보 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 동비를 회수해야 한다.

경) ① 의원연구단체가 연구활 동계획을 수립하거나 연구주제 지 제3호와 별지 제4호 서식에 | 따라 연구활동계획서 또는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 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 다.

② 의장은 제1항에 의한 계획서 또는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 게 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연구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8조(등록취소) 의장은 의원연구 | 단체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• 2. (생 략)

외부의 연구기관·단체 등과 공

제7조(연구활동계획의 제출 및 변 제7조(연구활동계획의 제출 및 변 경) ① 연구단체가 제3조에 따 른 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3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 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> 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 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 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.

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 라 계획서 및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.

|제8조(등록취소) ---- 연구단체 가 다음 각 호----------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

제9조(공동참여) 의원연구단체는 제9조(공동참여) 연구단체-----

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.

- 제10조(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 출) 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감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의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.
 -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 구활동비 <u>사용내역서</u>를 첨부하 여야 한다.
 -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<u>심사</u>를 거쳐 승인절차 를 이행하여야 한다.
 - ④ (생 략)

제10조(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
출) ① <u>연구단체</u>
②
<u>사용내역서와 관련 증</u>
<u>빙서류</u>
③
<u>심의</u>
④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서자 서명부

발의자		찬성자	
의원 성명	서명 날인	의원 성명	서명 날인